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880호
- 나. 제 출 자 : 장흥순 의원 외 17명
- 다. 제출일자 : 2015년 11월 11일
- 라.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3일

2. 제안이유

-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요금인상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해당연도 물가안정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연동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행정의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요금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이 해당연도 물가안정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 요금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3항).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생략 사항으로 정부의 연료비 연동시행으로 변동된 경우에 추가적으로 요금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해당 물가안전목표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여 행정의 탄력성을 확보하자는 것임.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능)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생략)</p> <p>2. 도시가스요금(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요금 원료비의 변동에 따라 도매요금을 연동하는 경우, 그에 맞추어 소비자요금을 조정하는 경우는 제외)</p> <p>3.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도시가스요금</p> <p>3.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의 조정 대상 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이 해당연도 물가안전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 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교통요금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나.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의 안정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서울 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하고자 시의원, 물가관련 시민단체 및 소비자 대표, 물가 관련 전문가와 언론·법조인 등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붙임자료 1 참조).
- 그 동안 위원회는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며, 시장이 결정·관여하는 교통요금(시내버스·마을버스요금, 택시요금 및 도시철도요금), 도시가스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있음.

다. 도시가스 요금 체계

- 현행 도시가스 요금체계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여 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에 공급하는 도매요금(원료비)과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소매비용(공급비용)을 합쳐 소비자 요금이 결정됨.
 - '15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총액에서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이 93%, 도시가스회사의 공급 비용이 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은 천연가스(LNG) 수입가격과 환율 등의 변동에 따라 2개월 단위(출수달 1일자)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정 승인하고 있음(「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1항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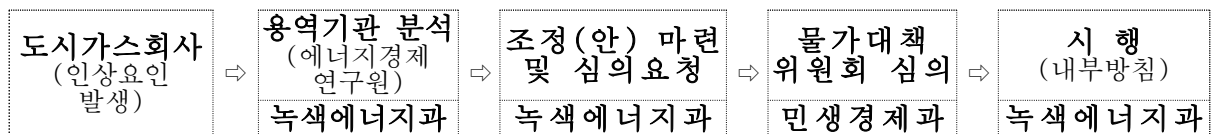
1)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

-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도시가스를 도시가스회사가 사용자에게 공급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매년 1회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음(「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2항2))
-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산업자원통상자원부의 지침인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 기준”에 의하여 산출되고 있음.
 -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단가는 총괄원가(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에서 당해연도의 판매열량³⁾을 나누어 산정함

라.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결정 과정

- 서울시는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경우에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담당과(녹색에너지과)에서 심의 요청을 하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음

< 서울시의 도시가스 공급 비용 결정 절차 >



- 2006년 이래 최근 10년간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추이를 살펴보면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세 차례(2009년 0.38%, 2014년 0.45%, 2015년 0.38%) 인상이 된 바가 있으나, 10년간 공급비

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 기준 제5조 (판매열량) 공급비용 산정기간 동안의 판매열량은 시·도지사가 작성한 수급계획, 회사별 판매실적, 회사별 수요예측치, 관련기관의 수요예측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한다.

용의 매년 평균 인상률은 1% 미만으로 물가안정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은행은 종전 중기 물가안정목표(2013년~2015년)를 2.5~3.5%로 설정하였으나 현재 물가안정목표(2016년~2018년)로 2%를 의결하였음.

< 10년간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심의 및 인상률 현황 >

(단위: 원/ m³)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공급비용	47.82	47.82	47.82	50.33	48.63	48.03	48.03	48.03	49.30	53.10
전년대비 인상률		동결	동결	인상 0.38%	인하	인하	동결	인상시기 부적절	인상 0.45%	인상 0.38%
심의여부	심의	-	-	심의	-	-	-	심의(부결)	심의	심의 (1차보류, 2차가결)

※ ('13년 부결) : 동절기 인상 부적절, ('15년. 보류) 인상시기 적정 검토, 인상내용설명 보완

마.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기존의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제외사항으로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대하여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인 해당연도 물가안정목표 미만인 경우를 추가하여 신속한 행정처리는 물론이고 가격 탄력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 앞서 살펴본대로 도시가스 요금의 대부분을 도매요금(원료비)이 차지하고 있어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비중이 작다는 점과 그간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인상률이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취지는 일견 타당성이 있음.

- 일부 시·도에서 요금인상 후 일정기간(경기도는 1년, 충청남도·세종시는 3년)이 경과한 후 해당 연도 물가안정목표 미만인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게 하고 있음.
-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주택용 도시가스 보급률이 97.4%로 타·시·도에 비하여 도시가스 사용 비율이 매우 높아 도시가스 공급비용이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공급비용의 인상이 소액인 경우에도 가스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특성에 따라 난방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르면 요금인상연도 당해 물가안정목표 미만으로 2년마다 도시가스 회사에서 임의로 요금을 인상할 수 있어 당장에는 요금인상률이 작더라도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경우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붙임자료 1〉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명단

2015. 5월 현재

연번	성명	현직	비고
1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2	김연숙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부원장	
3	양선희	서울YWCA 생명운동국 국장	
4	이진형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서울시지회장	
5	임경애	주부교실중앙회 사무총장	
6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7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의장	
8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	
9	이영희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서울지회 부회장	
10	이수진	한국노총 서울지역 부의장(여성위원장)	
11	장석주	민주노총 서울지역 수석본부장	
12	나종연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13	권미경	삼정KPMG AAS Inc. 상무(공인회계사)	
14	김경미	삼정회계법인 상무(공인회계사)	
15	안혁환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 변호사	
16	김혜례	KBS 방송문화연구소장	
17	권미경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	
18	박진형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	
19	류경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당연직
20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	당연직
21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	당연직
22	유재룡	서울시 정책기획관	당연직
23	천정욱	서울시 창조경제기획관	당연직

〈붙임자료 2〉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현황(최근 5년간)>

	개최일자	안건수	안 건 명	회 의 결 과
1	'11-01-18	1	2011년 서울시 물가종합대책 협의	- 2011년 물가대책에 대한 의견 개진
2	'12-01-30	1	지하철과 버스요금 조정안 - 기본요금150원인상(13.9%인상) - 어린이·청소년 교통카드요금동결	- 원안가결 (찬성 13, 반대 6, 기권 1명)
3	'13-09-24	1	택시요금 조정(10.9% 인상) - 중형기본요금 600원 인상 - 중형거리요금 100원/142m - 대형/모범 기본요금 500원	- 원안가결(찬성12, 반대5) 중형:기본2,400원→3,000원,거리100원/142m 대형/모범: 기본4,500원→5,000원
4	'13-11-25	1	도시가스요금 조정 심의 - 0.0556원/MJ(1.93원/m ³)인상요구	- 원안 부결(반대 9, 찬성 7)
5	'14-06-17	1	도시가스요금 조정 심의 - 0.0984원/MJ(3.8원/m ³)인상요구	- 원안 가결(찬성 11, 반대 3) 1.1327원 → 1.2311원/MJ
6	'15-06-12	1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조정 심의	- 심의유예(보류 10, 찬성 9, 반대 1)
7	'15-06-18	1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조정 심의	- 원안가결(찬성 12, 반대 8)

〈붙임자료 3〉

조례개정(안)에 대한 서울시 검토의견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장흥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 개정개요

- 발의일자 : 2015. 11월 11일
- 발의의원 : 장흥순 의원 등 18명 (새정치민주연합, 환경수자원위원회)
-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취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요금인상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해당연도 물가안정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 연동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행정의 탄력성 도모 ※ 도시가스 요금 해당

- 개정(안) 조문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3조 (기능) 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요금(시내버스·마을버스요금, 고급형 택시를 제외한 택시요금 및 도시철도요금) 2. 도시가스요금(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요금 원료비의 변동에 따라 도매요금을 연동하는 경우, 그에 맞추어 소비자요금을 조정하는 경우는 제외) 3.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제3조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현행과 같음) 2. 도시가스요금 3.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제2항의 조정 대상 요금 중 인상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이 해당연도 물가안정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교통요금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타시도 사례 : 조례에 의거 심의생략 4개시도(경기, 충남, 세종시, 울산)

가스요금 심의현황 (2006년~ 현재)

- 개최현황 : 6회 개최(가결 4회, 부결1회, 보류1회)

- 가스요금 인상률 : 최근 10년간 가스요금 인상율은 1%미만으로
물가안정목표인 3%에 미치지 못함

〈 10년간 가스요금 심의 및 인상률 현황 〉

(단위: 원/ m³)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공급비용	47.82	47.82	47.82	50.33	48.63	48.03	48.03	48.03	49.30	53.10
전년대비 인상률		동결	동결	인상 0.38%	인하	인하	동결	인상시기 부적절	인상 0.45%	인상 0.38%
심의여부	심의	-	-	심의	-	-	-	심의(부결)	심의	심의(1차보류, 2차가결)

※ ('13년 부결) : 동결기 인상 부적절, ('15년. 보류) 인상시기 적정 검토, 인상내용설명 보완

검토의견

○ 가스요금의 93%에 해당하는 총괄원가는 총리실 산하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산정하고 있는 점, 일부 시·도에서 요금 인상률이 물가안정 목표 이하일 때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례개정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서울시 주택용 도시가스 보급률은 97.4%로 시민의 도시가스 사용 비중이 매우 크며 인상액이 소액이더라도 가스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에는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서울시 419만4천 세대 중 408만4천 세대가 도시가스 사용('14년 에너지 백서, '15. 2월 서울시)

○ 또한 최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13.부결, '15.보류)는 가스요금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15. 7월 교통요금 인상 시 시민공청회, 토론회를 추가하여 절차를 강화한 점, '15.12.14 가스요금 인상후 인상분 산출내용이 부당하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점, 가스요금 인상률이 매년 물가안정목표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가스요금 인상절차를 약화 시키는 조례개정(안) 타당성 여부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참고 자료1>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현황

개정(안)에 대한 요금주관부서(녹색에너지과) 의견 : 수용

- 원가산정의 공정성이 유지되므로 신속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행정업무 효율성 강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6년간)

연번	대최일	안 건	인상율	심의결과
1	'09-05-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요금 인상 - 기본요금 500원 인상 : 1,900원 ⇒ 2,400원 	26.3%	- 가결
2	'12-0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과 버스요금 조정안 - 기본요금 150원 인상 - 어린이·청소년 교통카드요금 동결 	13.9%	- 가결
3	'13-09-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요금 조정 - 중형기본요금 600원 인상 - 중형거리요금 100원/142m - 대형/모범 기본요금 500원 	10.9%	- 가결
4	'15-06-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조정 심의 1. 도시철도(지하철)요금 : (1,050원 → 1,250원) 200원 인상 2. 시내버스 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지선 (1,050원 → 1,200원) 150원 인상 - 광역 (1,850원 → 2,300원) 450원 인상 - 순환 (850원 → 1,100원) 250원 인상 - 심야 (1,850원 → 2,150원) 300원 인상 3. 마을버스요금 : (750원 → 900원) 150원 ※ 청소년 어린이요금 동결(교통카드 이용시) 	19.0% 14.3% 24.3% 29.4% 16.2% 20.0%	6.12 6.18 가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대상 공공요금

1. 교통요금(시내버스·마을버스요금, 택시요금 및 도시철도요금).
2. 도시가스요금
3.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 사업요금 수수료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대관료 등 타시도 사례가 있으나 서울시 경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이후 심의한 수수료, 사용료는 없었음

<참고 자료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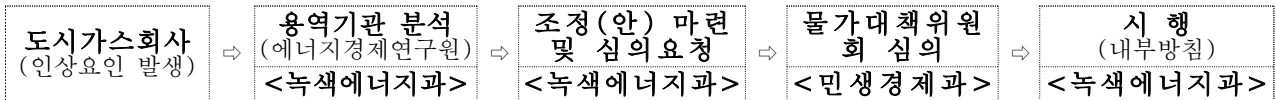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현황

□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결정 구조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100%)	=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2개월마다 홀수달에 조정) (93%)*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시·도지사 승인 - 연 1회 조정, 7.1 기준) (7%)
--------------------------	---	--	---	--

* '15.9.1. 기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중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이 차지하는 비율

□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결정 절차(서울시)



- 도매요금 : 천연가스(LNG) 수입가격과 환율 등의 변동에 따라 2개월 단위(홀수달 1일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정

* 도매요금 '15.1.1자 5.9%, 3.1자 10.1%, 5.1자 10.3% 각각 인하, 9.1자 4.4% 인상

- 공급비용 : 도시가스회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도시가스를 사용자에게 공급할 때 소요되는 것으로, 매년 1회 시·도지사가 조정

* 비용내역 : 인건비, 복리후생비, 수선비,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감가상각비 등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

- 관련근거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지침)
- 산정방식
 - 제 14조(요금의 책정), 공급비용 단가 = 총괄원가 ÷ 판매열량(물량)
 - * 제7조 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공급비용에 반영
 - 제 15조(도시가스 요금수준), 소비자요금 = 원재료비 + 공급비용 단가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조정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14년도)

- 소비자요금 기준으로 0.45%

구분	조정전	조정후	증, 감	증감율
평균 소비자요금 계 (100%)	22.0977원/MJ (953.54원/m³)	22.1961원/MJ (957.34원/m³)	0.0984원/MJ (3.80원/m³)	0.45%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 (94.5%)	20.9650원/MJ (904.24원/m³)	20.9650원/MJ (904.24원/m³)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5.5%)	1.1327원/MJ (49.30원/m³)	1.2311원/MJ (53.10원/m³)	0.0984원/MJ (3.80원/m³)	8.69%

※ 정부 물가안정목표제의 2.5%~3.5%의 13/100~18/100수준

〈참고 자료3〉

전국 시·도의 도시가스요금 물가심의 현황

2016.1

연번 시도	조례명	심의위원회	조문 내용
1 서울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물가대책위원회	
2 경기	소비자기본조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21조제2항> ② 제1항제5호의 조정 대상 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이 해당 연도 물가안정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 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버스요금과 택시요금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인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물가대책위원회	
4 부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물가대책위원회	
5 대구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지역경제협의회	
6 광주	물가대책위원회설치 운영 조례	물가대책위원회	
7 대전	소비자 기본조례	소비자정책위원회	
8 울산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물가대책위원회	<제2조제2항> - 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또는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관계법령의 제·개정이나 기타의 사항에 의해 전국 공통적으로 변경되는 요금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9 강원	소비자 조례	소비자정책위원회	
10 충북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충청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제정책심의위원회	
11 충남	소비자 기본조례	소비자정책위원회	<제18조제3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대상 요금 중 인상 후 3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도시가스, 택시요금이 해당되며 도시가스요금은 최근 심의한적 없음
12 전북	소비자 기본조례	소비자정책위원회	
13 전남	소비자 기본조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14 경북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물가대책위원회	
15 경남	소비자 기본조례	소비자정책위원회	
16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조례	소비자정책위원회	<제18조제3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대상 요금 중 인상 후 3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당해연도 소비자물가 억제 목표 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공공요금 해당.